[서식 제1호]

생활지원비 신청서
※ 색상이 어두운 칸에는 신청인이 적지 않고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				처리기간	30일	
 신청인	성명					주민등록번호		
(확진자	주소					전화번호		
`또는 격리자)	입원·격리장쇠			병원)	_ □ 생치		치료센터)	
			(□ 재택환지	나(명)□		자(명) 🗆 기타		
입원 • 격리자	성명	신청인과 의 관계	주민등록 번호	전화번호	입원·격리 통지기간	격리구분	지원제외대상 여부	
						□입원 □생치 □자가		
						□입원 □생치 □자가	□해당 □미해당	
						□입원 □생치 □자가	□해당 □미해당	
						□입원 □생치 □자가	□해당 □미해당	
						□입원 □생치 □자가	□해당 □미해당	
참고	 ※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대상 ①「감염병예방법」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·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·격리자 본인이 국가·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-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제2조제1호 가 ~ 다,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* 다만,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- 「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☞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「감염병예방법」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(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)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'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'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							
 입금	예금주 금융회사명							
계좌	계좌번호(신청인명의)							
신청인 제출서류	1.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신청인, 대리인 신분증 지참) 수수료 2.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) 없음 3.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							
유급휴가 미사용 확인서							확인 (∨체크)	
본인은 생활지원비 신청과 관련하여 가구 내 격리자가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업주로부터 받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향후에도 사업주가 유급휴가비용을 지급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.								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확인 (▽체크)								
본인(가구원 포함)은 해당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주민등록표 등·초본 *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								
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확인 (V체크)								
본인(가구원 포함)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0조의4에 의한 생활지원비의 신청 적격 확인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(성명, 주민번호, 주소)의 수집·활용 및 제3자의 기관(사회보장정보원, 국민연금공단)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업무 종료시 제공 받은 개인정보 폐기								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								
년 월 일 장								
	신청인(대리신청인) 성명: (서명 또는 인							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기하								